

창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502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1. 20.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단205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차액인 133,022,501원을”을 “차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3,022,501원을”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원고가 피고에게”부터 제4쪽 제12행의 “증거도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피고에게 133,000,000원을 지급한 행위가 원고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피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G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일단 원고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고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원고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데, 피고가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1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준공금정산합의서(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경리 직원)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이다(제1주장).

2)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정산내역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기재된 정산금은 150,140,249원으로서 원고가 2017. 11. 6. D과 사이에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165,000,000원과 상이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정산합의서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제2주장).

3) 원고는 D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이 아닌 피고가 원고로부터 133,000,000원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제3주장).

4)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D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취소한다(제4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42776 판결 등 참조),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898(본소), 2014다12904(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 법인인감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은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3, 5,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경리 직원)가 임의로 원고의 법인인감을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D의 직원 F가 2018년 1월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정산합의서를 첨부하여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296,465,000원과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정산금 150,140,249원의 차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3,022,501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팩스전송문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 경리 직원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상의 정산 내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2018. 1. 4.부터 2018. 3. 13.까지 약 3개월 동안 8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송금 기간, 송금 횟수, 송금 액수를 고려하면 원고 회사 경리 직원이 임의로 위 돈을 집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2)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296,465,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3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63,465,000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하도급대금 165,000,000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3) '원고가 수행한 공사는 소공원 1부터 소공원 3까지의 식재공사이고, 견적내역서(을 제2호증)에 따른 위 공사대금의 합계는 156,748,034원(= 27,361,130원 + 98,010,704원 + 31,376,200원)인데, 원고의 공사 미이행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150,140,249원은 위 견적서에 따른 금액과 유사하다.'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등 참조).

위 1)의 나)항에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등 참조).

나) D의 직원 F가 원고에게 보낸 팩스전송문(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296,465,000원과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정산금 150,140,249원의 차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3,022,501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D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133,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